

온라인 공동강의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대한민국의 대학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대학교육을 대체하는 교육산업의 확대, 장기간에 걸친 대학 등록금 동결 등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 외부 환경의 문제와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기술의 진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과와 전공 중심의 경직된 학문은 현대 사회에 대두되는 복잡한 인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공동강의 네트워크는 교육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이 같은 교육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지식 기반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역량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강의 활성화 사업에 협력하기로 한다.

첫째, 회원교는 개방과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운영에 협력한다. 회원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회원교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회원교는 교육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확산시켜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온라인 공동강의 네트워크는 각 대학의 교수 인력과 학습 자원을 공유하고 교과목 공동 개발·운영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가치를 창출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육의 소명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21일

온라인 공동강의 네트워크 창립회원교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밭대학교			

온라인공동강의네트워크 회칙

제정 2022.1.2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협의회는 “온라인공동강의네트워크”(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의회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대학 교육과 학습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각 대학의 교수 인력과 학습 자원을 공유하고 교과목 공동 개발·운영을 통하여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국내대학간 교과목 공동 개발 및 운영
2. 협의회교 소속 학생들의 공동 수강
3. 협의회교 학생 공동 교육·연구활동 지원
4. 협의회교 공동 교과목 운영을 위한 학습 플랫폼 운영
5. 학위 및 비학위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기타 협의회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교

제4조 (회원교의 가입) ① 이 협의회 회원교로 참여하고자 하는 4년제 대학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회원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가입승인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교는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의 효력은 정기총회일로부터 발생한다.

제5조 (회원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협의회 회원교는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본 협의회 회원교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의회 회칙준수 및 총회 결정사항 이행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원교별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중 대표 1인과 부대표 1인을 지정하여 협의회 의사결정 및 운영에 참여
4. 공동강의 제작 및 운영에 참여
5. 회원교 소속 학생들의 공동강의 수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및 수강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제6조 (회원교의 제명 등) ① 협의회 회칙을 위반한 회원교, 또는 협의회 취지에 반한 활동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경고 및 시정지시
2. 회원 자격정지
3. 제명

② 2년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교에 대하여는 1년간 자격정지 후 제명한다. 단, 회원교에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회원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장 회원, 임원 및 기구

제7조 (회원,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협의회 회원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각 회원교별 대표 및 부대표 각 1인으로 한다.

② 이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인, 부의장 1인
2. 감사 1인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본 협의회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교 대표가 맡는다.

② 총회는 회원교 중에서 회장교를 선출하며, 부의장은 회장교 이외의 회원교 대표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본 협의회 감사는 총회에서 회장교 및 부회장교 이외의 회원교 대표 중에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의장 및 부의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원교의 대표 및 부대표로 지정된 보직자가 변경된 때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임원 직위를 자동승계하며,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직위도 자동 승계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속한 대학의 교직원을 사무국장으로서 임명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의장의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본 협의회 사업과 회계 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출석 보고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본 협의회는 공동교육 활성화 실무협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의회 의결기구이며 그 구성은 제7조의 회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구분 및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학기 1회 개최하되, 온라인회의 또는 대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회원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협의회 주요한 안건으로 의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제14조 (정기총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1. 교과목 공동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감사의 선출
4.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투표권은 회원교별 2표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회회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1/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 ③ 회원수 가운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한다.

제5장 실무위원회

제16조 (실무위원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회원교 대표가 지정한 각 회원교별 실무자 2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제10조제1항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의장은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17조 (구분 및 소집) 실무위원회는 매학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실무위원회 의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정기회의 협의사항) 다음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협의한다.

1. 교과목 공동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
2.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19조 (회계연도) 이 협의회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재정) 이 협의회회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21조 (결산) 결산은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7장 기타

제22조 (기타)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의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22. 1. 21.)

제1조 (설립회원대학) 이 협의회회 창립회원대학은 다음 각 호의 대학으로 한다.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밭대학교			

제2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